

제415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7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상정된 안건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

(14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원회 또한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된 점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회법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4시06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법률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님은 불참하였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관님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먼저 오늘 소회의장에 소관 부서인 법무부차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삼권분립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과 의무에 이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 대상 부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인 장차관들과 국무위원들의 국회를 상대로 한 보이콧 행태는 단지 법사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현재 타 상임위의 장차관들도 상임위 출석과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행정부의 보이콧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법무부 장차관들과 그리고 정부부처의 국무위원들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오늘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한 법안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으로 모두 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안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있습니다.

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승리를 한 근간에는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정점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있었고 그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이 정부, 이 정권 그리고 이 법무부장관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의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 왔었으면 국민의힘당은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사위의 법안소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을 하다가도 아니고 물에 떠내려간 분들을 구하다가 내 생때같은 군인, 내 해병 자식이 죽었는데 이것 수사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특검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국민의힘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들어올 것을 좀 더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위에 법무부차관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가 원만하게 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의 녹을 받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심우정이라고 하는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논의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힘당이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민의 모든 관심사가 몰려 있는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법안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이 자리에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안 나온 것은 끝내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드리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제1소위에 법무부차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 그 이상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채 상병 사건의 어머니, 고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19일이면 1주기가 되니 그 이전에 정말 진상을, 진실을 반드시 좀 밝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기본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그 어머니께서 국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자식이 왜 죽었는지 이유나 좀 알자, 이유 좀 밝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법사위 소위에 국힘은 물론이고 법무부차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헌법과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 엄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법 심의 자리에 법무부차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법무부는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정말 합당하거나 합니까? 법무부는 이제 법을 지키는 법무부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없을 무’ 자 무법부 또는 ‘없을 무’ 자 법무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법무부장관, 차관 정말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국민적 심판이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지난 4월 10일 총선의 민의는 국회는 제때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3주째가 되도록 여기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금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시더니 급기야 이제 법무부까지 국정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관이 불출석하더니 이제 법안소위까지 법무부차관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안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인데 다시 한번 법무부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24년 5월 30날에 발의되었고 6월 11일에 회부되어 그다음 날 6월 12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대체토론 시에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수사가 권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국정농단이며 이를 밝혀 내기 위해 특검법이 발의된 것이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선고기간과 관련해서도 역시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스케치를 마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충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석현 전문위원께서 상설특검법과 이번 특검법의 비교 및 조문별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심사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여 두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부터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법의 입법 목적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2조제6호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앞의 규정과 유기적·

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특정한 의혹 사건으로 한정한 사례, 둘째 특정한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사례, 셋째 특정 의혹 사건 및 관련 사건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회의 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저희 소위 회의는 지금은 비공개지만 나중에 회의록, 속기록은 다 공개가 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우선 4페이지의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를 충실히 소개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문별 검토에 들어간다면 한 조 한 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를 전문위원께서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위원장님, 조문별 검토에서 해당 부분에서 상설특검법과 이 제정안과의 각 비교가 자세하게 거기에 돼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 각 개별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회의 자료를 보니 각 조문에 각 상설특검과 또 기존 특검법에 대한 비교 사례를…… 전문위원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팬찮으시면 그러면 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항 조문별 검토 지금 1조, 2조까지 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회의는 특검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일람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세한 조문 심사는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려면 소위 자료 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을 하였고, 2016년 11월 최순실 특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5월 드루킹 특검법에서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상설특검법은 제정안과 같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를 비교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특별검사보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에는 2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특검법은 4인, 드루킹 특검법은 3인,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4인, 이 건 제정안의 경우에는 3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사관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30인 그리고 40인, 35인, 40인 그리고 제정안은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견검사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이 5인 그다음 최순실 특검법이 20인, 드루킹 특검법이 13인,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10인 그리고 이 제정안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경우 상설특검법부터 차례대로 30인, 40인, 35인, 30인 그리고 제정안은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큰데 이는 수사 대상과 그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과 2항에서는 특별검사 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 등의 경우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3항은 파견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시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안 제21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4항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개별 특검법 13건 중 9건은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20일로 그리고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수사준비기간이 20일, 수사기간은 60일, 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30일 이내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의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2심 및 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재판기간을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2심,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고 최근 개별 특검법에서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한 바가 있고 수사 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는 재판기간에 관해서 충실향 심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내용으로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대통령은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임사유로서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 사항입니다.

재판관할과 이의신청 그리고 별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외에 별도로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에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별칙을 규정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에 징역형, 자격정지형, 별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는 별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 법무부차관께서 나오지 않으셨으므로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판기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상설특검법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신속의 필요성을 달리 봐서 이것은 3개월, 2개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실히 심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제가 법안을 보니까 21대 때 제기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이 국방부, 대통령실 이 정도였는데 새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이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지방청이라든가 인권위원회라든가 해병대사령부 등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간은 21대 때 제기되었던 특검법과 수사기간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일 플러스 1회 30일 연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늘었으면 이 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늘려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한 것이 대통령에게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임명한 걸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수사 대상이 늘었는데다 거기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나마 수사기간이 촉박한데 대통령에게 30일 연장해 달라면 거부할 것이 예상돼서 제 생각은 7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나 대통령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오늘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실상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문제점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와 그리고 법원행정처,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은 특별검사의 임명이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 의해서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미 2012년 내곡동 사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임명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또 2016년 최순실 특검에서는 당시 박근혜정부의 반대편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야당이 했던 거지요. 그리고 2018년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서도 이때는 민주당 정부였는데 이때는 반대쪽의 야당 측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의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 해명 특검법에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기존 특별법의 예에 비추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실상 정권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에 대한 방편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 만큼 특검법의 본질상 야당 쪽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을 실제로 수사하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사실상 민주당 쪽이 특검을 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는 그동안의 관례나 특검법의 전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지적이고 또 실제로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야당 쪽에서 특검을 지명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입장과 혹시 법원행정처 차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저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갈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종래의 특별검사의 임명 방법이 계속 사안마다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거나 혹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질의보다는요 조금 전에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연장에 보니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설특검도 그렇고 이번 특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성윤 위원 특검 연장을 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서영교 위원 저는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큰일날 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성윤 위원님의 말씀하신 기간 연장을 기준 해 왔을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특검에서 연장하고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 쪽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저도 그 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임명 안 할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자를 임명하는 조항까지 둘 정도면 특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취지를 살린다면 기본 70일 수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스스로 알아서 필요하다면 30일은 연장해서 하고 국회나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면 총 100일의 수사기간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이면 최소한 100일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마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대통령에게 30일 연장해 달라고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는 조항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법 제8조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그리고 12조의 국민들 알권리를 위한 언론브리핑에 관련된 조항, 이 두 조항과 관련해서 범위나 내용이 조금 애매한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 8조에 의하면 ‘특별검사와 파견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나 사건 처리보고 등에 관해서는 공표·누설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조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의사실은 수사상의 비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범위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8조에 보면 피의사실은 안 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수사기간 연장사유, 사건 처리보고만 공개할 수 있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개의 법이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존의 특검법도 사실 거의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한석현**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게 되면 12조에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8조에서 누설이나 공표를 금지하도록 한 비밀과 수사 내용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것만으로 해석은 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실제 집행상에 있어서는 서로가 혼재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어서 아직 회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통해서 두 규정 간에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 사안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대한민국이 온통 이 사건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사안이라 국민들의 알권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너무나 사실상 굉장히 넓은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반해서 12조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브리핑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가 될 가능성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누설이 금지되는 그런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업무상 비밀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합적인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예.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전문위원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그런 법안인데요.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재의 요구를 할 때의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의 요구하면서 첫 번째 내용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라든가 혹은 자료를 보면 기존의 특검법 중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시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례는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전문위원 한석현 조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특별검사 이 법안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은 지금 4인 추천까지는 변호사단체라든가 그런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한석현 이 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비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예전에 4인, 2인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해서 2인, 그중에 대통령께서 1인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다 그 주장은 지금 이 법안과는 맞지 않는 것이겠네요?

○전문위원 한석현 일단 이 법안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한 명씩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법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특검법안이 재의 요구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해서 비교섭단체 추천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고 이와 같은 전례는 충분히 있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특검법안에는 대국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검사제도가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지금 특별검사 수사 상황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특별검사 쪽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그다음에 이예람 중사 특검법, 3건에 있어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대국민 보고를 하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이 있었고 그것이 위헌적이거나 혹은 피의사실을 누설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의 요구 주요 내용 중에 예전 특검법안이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러면 예전 거부된 특검법과 그다음에 새롭게 발의된 이 특검법 수사인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큰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 추천 절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한 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변경된 그 두 가지가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인력 면에서는 어떤가요?

○전문위원 한석현 수사인력은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인력은 같다.

사실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는 수사의 대상을 한정하고 그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서 수사하도록 하면 인권침해 수사가 일어날 우려가 없으므로 오히려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한 것은 평계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전 특검법의 재의 요구 내용은 사실 이유가 없거나 혹은 거부하기 위한 평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은 그래도 대통령실의 재의 요구 내용을 일부라도 존중해서 법안의 내용을 좀 수정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토론과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위원님들 더 자유롭게, 소위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채 해병 특검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 수사 대상이 보면 대통령실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그리고 관련한 불법행위 그리고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그리고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 은폐, 무마, 회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불법행위가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살아 있는 권리,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국방부 또 외교부, 법무부 등 현재 현직에 있는 그런 고위층들에 대한 수사를 가장 대상으로 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현직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특검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할 수가 있고 결재를하거나 중인 출석을 막거나 더 나아가서는 증거 위조를 하거나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상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의 내용에, 특히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들도 살아 있는 권력의 일부를 다루는 법이었지만 이 법의 경우에는 정말로 최정점에 있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정면으로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인 만큼 이런 살아 있는 권력, 실제로 각 부처의 가장 최고위층들에 의한 이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 규정에 특별히 해당되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여기에 좀 추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대상,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진해서 이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 혹은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이 되고요. 일단 관련 입법례를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해 보겠습니다. 리서치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을 체계에 맞춰서 입법에 녹여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행정처 입장에서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녹여 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솔직히 며칠 전 법사위에서도 법원행정처장님이랑 헌법재판소 차장님께 헌법상의 권리인 법원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재판 권리,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지만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등 가족에 관한 재판이나 그런 게 심판대상일 경우에는 재판관 본인이 현재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척 내지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 아닌 것은 법원행정처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또 이 특검에 관한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고, 특히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은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고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의하고 기존의 입법례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더…… 정말 국민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또 독립된 기관인 만큼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한 그런 공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유념하고요 구체적인 법령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조금만……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전현희 위원님이 참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보강되면 좋겠고.

사실은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 중에 당시 신원식 국힘당 국방위 간사가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열일곱 번을 합니다. 둘이 같이 한 전화는 열여덟 번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 국힘당 간사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적, 수사 대상 안에 보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죽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 관계자들이기는 한데 그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되었지요. 그래서 수사 대상에 국방부가 들어가서 다행이기는…… 기본 대상인데 사실은 신원식이라고 하는 국방위 간사만이 아니라 당시 국힘당이 어떻든 여기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 국방위 간사였던 사람이 ‘제가 전화를 국방부장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말할까 봐 제가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라고 국방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받아요, 둘이서. 둘이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여덟 번을 주고받은 거지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전화한 건 열일곱 번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국방부 수사 외압, 곳곳에 수사 외압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국힘당 관계자의 수사 외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문위원 한석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주체로 좀 추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으니까요.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 중의 하나가 그 사람이고 국방위 간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상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국회를 생각을 못 했던 거기도 한데요. 어떻든 있는데 ‘등’자로 간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발언을 함으로써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어떻든 이 조문에 녹여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명확히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 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부처의 장들이 이와 관련해서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녹여내듯이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입법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아까 전현희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수, 자백하거나 이런 경우에 형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공무원들의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포7대대장 그분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말 반성하는 것만이 유족에 대한 진실한 뭐랄까…… 그런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 중에서 반성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분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형을 감면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뒤져 협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숙제이기는 한데 8조 4항에 보면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검사님들이 항상 수사 후에 공소제기 기간이 되게 됩니다. 특히 파기환송된 경우는 되게 오래까지 하는 바람에 약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특별검사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 그래서 13건 중 9건은 아마, 공소제기 유지 단계에는 겸직 근무를 없앴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충돌보다는 어떻든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신원식 등 국방부장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힘당 의원으로 있을 때 그 관계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좀 더 넓히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면 국회도 망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것은 내용하고 또 조금 다른데요, 오늘 법무부차관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현안질의를 할 때 법무부장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법청문회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청문회를 하면 법무부차관이 안 나올 수 없는 조건이 될 텐데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차관이 나오는 것들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무부가 거부하는 사유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야당만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없다. 추천한 사례가 없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아까 말했듯이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국정농단, 드루킹과 국정농단 이런 데서는 야당이 어떻든 일괄적으로 특검을 추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간 사례가 BBK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을 다 받았지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수사 중인 때 특검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15건 중 10건이 수사 중인 때 특검을 했고요.

여태껏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브리핑을 하는 것은 아주 독소조항이다’라고 했는데 국정농단 때 직접 브리핑을 해 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국정농단 검찰 특검 수사팀장인가 그랬을 때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법무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언론하고

뭐 이런 데에서 금방 다 사실이 깨쳤단 말이에요, 다 틀렸다고. 다 깨졌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국민이 다 알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하면 이것 완전 중립성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법무부가 왜곡하는 브리핑을 해 대개 된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중립성의 위반이고 그것도 또 허위 사실이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특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특검법으로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중립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법으로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특검법안에 녹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회의하는 중의 발언으로 끝내야 하는지 등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께 이야기를 하셔서 좀 녹여 내거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입법청문회 혹은 현안 관련 청문회 형식을 빌려서 전체회의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최되기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회의가 쭉 열릴 때 그때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특검법 전반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관계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특검법 관련된 개선안 혹은 보충안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소위는 여기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심사는 좀 조문 하나하나 더 상세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승원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석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